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방 위 사 업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소요수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임.

3. 주요내용

가. 선행조치를 반영하는 소요수정 절차 간소화

- 1) 무기체계 소요수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소요제기, 소요수정,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에 이르는 최초 소요결정 절차를 다시 준용함에 따라 사업 기간 장기화 요인으로 작용
- 2) 이에 선행연구, 소요검증,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로 전력화시기, 작전 운용성능 또는 소요량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방사청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정하고, 이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중
- 3) 따라서 선행연구, 소요검증 및 사업타당성조사 등 선행조치 결과로 소요수정이 필요한 경우 최초 소요결정 절차를 준용하지 않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요를 수정할 수 있도록 영 제23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 기대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제3절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2(선행조치를 반영하는 소요수정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을 수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심의·조정 과정에서 무기체계 등의 전력화시기, 소요량 또는 작전운용성능이 수정된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이를 근거로 소요를 수정할 수 있다.

1.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소요검증 결과
2.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
3. 「국가재정법」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를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3조의2(선행조치를 반영하는 소요수정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영하 여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 전략을 수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심의·조정 과정에서 무기체계 등의 전력화시기, 소요량 또는 작전운용성능이 수정된 경우 합 동참모의장은 이를 근거로 소요 를 수정할 수 있다.</u> <u>1.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소요 검증 결과</u> <u>2.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</u> <u>3. 「국가재정법」 제50조에 따 른 총사업비 관리를 위한 사 업 타당성 조사 결과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전력정책과	
연 락 처	(02) 748 - 5679